

요 청 서

■ 계약당사자

위탁자	공동1순위 우선수익자
대준종합건설(주)	북부산신용협동조합, 거창신용협동조합

■ 신탁부동산의 표시

가.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5-21번지 외 12필지

본인은 위 신탁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첨부된 토지사용 동의서에 귀사의 인감 날인을 요청하오며,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및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.

- 아 래 -

■ 사용자

단체명	고유번호	주소
태백황지 지역주택조합	603-82-80380	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53-1, 3층(황지동)

■ 사용승낙 대상 신탁부동산

가.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5-21, 405-24, 402-17, 402-14번지 (이상 4필지)

■ 사용용도

가.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용자가 관할관청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, 조합원 모집 신고, 사업계획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

2024년 8월 6일

요청자(위탁자)

상 호 : 대준종합건설 주식회사



우리자산신탁(주) 귀중

토지사용 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
동의자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대준종합건설주식회사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180111-1111474
	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, 1501호(우동, 국제빌딩)	전화번호 010- -6194

본인은 ([]) 「주택법」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, []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)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[]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래의 본인 소유 토지(권리)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2024년 7 월 31 일

동의자

대준종합건설주식회사
(서명 또는 인)



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귀하

동의자 소유 토지(권리) 현황					
번호	구분	지번	지목/용도	면적(㎡)	비고
1	소유권	405-21	임	36,531	
2	소유권	405-24	임	3,296	
3	소유권	402-17	잡	8	
4	소유권	402-14	잡	249	

첨부서류	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-----	---

유의사항

- 구분란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동의자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습니다.
- 지목/용도란에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를 적습니다.
- 동의자 소유 토지(권리)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해야 합니다.

인 감 증 명 서



법인등록번호 : 180111-1111474



상 호 : 대준종합건설 주식회사
본 점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, 1501호(우동, 국제빌딩)

사내이사 문*환
(720901-)

관할등기소 :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: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

이 인감은 등기소(과)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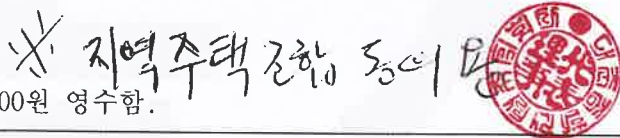
2024년 07월 29일
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수수료 1,000원 영수함.



1.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,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 (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)

232448110140109021710045200724110121T1M1S1P1N0S8P1 15

발급확인번호 PAYL-PYGA-NUW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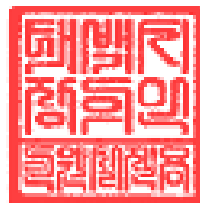
지역주택조합
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

신고번호	2024 - 건축과 - 지역주택조합모집 - 1		
조합명	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	직 장 명	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
대표자	이 * 춘	생년월일	1962-04-18
사무소 소재지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명월길 412 (전화: 010 0459)		
조합원 수	479명		
조합원 모집 시기	2024년08월21일 ~ 2024년12월31일		

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5항에 따라
위와 같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4년 08월 22일

태백시장 인





태 백 시



수신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대표 이 * 춘
(경유)

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알림(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(가칭)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
2. (가칭)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건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 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신고 개요

1. 조 합 명: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(대표: 이 * 춘)
2. 조합주소: 태백시 대학길 53-1, 3층
3. 건설예정지: 태백시 황지동 405-21 외 4필지
4. 대지면적: 39,962㎡
5. 건축규모: 지하1층, 지상18~20층, 479세대
6. 조합원수: 479명
7. 업무대행사: 주식회사 유유
8. 모집기간: 조합원 모집신고 공고일 ~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

붙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필증(별첨) 1부. 끝.

태 백 시



주무관 박찬호 주택팀장 최철순 건축과장 권우혁 전결 2024. 8. 21.

협조자

시행 건축과-17027 (2024. 8. 22.) 접수

우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(황지동) / www.taebaek.go.kr

전화번호 033-550-7169 팩스번호 033-550-2962 / qkrch@korea.kr / 비공개(6)

내 정보도, 타인의 정보도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!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태백시 황지동 405-21번지 일원의 태백레제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2. 20.

태 백 시



1. 사업의 명칭 : 태백레제빌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의 성명·주소 : 대준종합건설(주) 대표 문*환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, 1501호(우동, 국제빌딩)
3. 사업시행자의 위치·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
 - 가. 위 치 : 태백시 황지동 405-21번지 일원
 - 나. 규 모
 - 1) 대지면적 : 39,962㎡
 - 2) 건축면적 : 4,978.6896㎡
 - 3) 연 면 적 : 74,078.0937㎡
 - 4) 세 대 수 : 아파트 479세대
 - 5) 사업규모 : 지하1 / 지상18~20층 아파트 8동, 부대·복리시설 5동
 - 6) 사 업 비 : 129,145,800천원
4. 사업시행기간 : 2007.7.12. ~ 2026.9.30.
5. 사업변경승인일: 2023.12.20(1999-1-6호)

※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함께 일괄·의제처리 되는 사항입니다.

□ 의제(협의) 사항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 설	①	황지 공동주택	태백시 황지동 405-21번지 일원	-	증)39,962	39,962	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적(m ²)	결 정 사 유
신 설	①	태백시 황지동 405-21번지 일원	39,962	·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

□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계획

가.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사항 없음)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39,962	-	39,962	100.0	
주거 지역	제2종일반 주거지역	39,962	-	39,962	100.0	

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(해당없음)

□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▶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위 치	면적(m ²)	비고
합계		-	39,962	
A	A1	태백시 황지동 405-21번지 일원	39,962	공동(아파트)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대 준 종 합 건 설

우 48088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, 1501호(우동,국제빌딩)

수 신 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참 조 : 건축과 주택계
제 목 : 사업승인에 대한 승계확약서

- 귀 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- 태백시 황지동 405-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 건(2023년 12월20일자 태백시고시 제2023-105호) 에 대하여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시 사업승인을 승계 또는 취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4년 08월 05일

대준종합건설(주) 대표이사



토지사용 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
동의자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대준종합건설주식회사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180111-1111474
	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, 1501호(우동, 국제빌딩)	전화번호 010- -6194

본인은 ([]) 「주택법」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, []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)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[]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래의 본인 소유 토지(권리)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2024년 7 월 31 일

동의자

대준종합건설주식회사
(서명 또는 인)



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귀하

동의자 소유 토지(권리) 현황					
번호	구분	지번	지목/용도	면적(㎡)	비고
1	소유권	405-21	임	36,531	
2	소유권	405-24	임	3,296	
3	소유권	402-17	잡	8	
4	소유권	402-14	잡	249	

첨부서류	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-----	---

유의사항

- 구분란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동의자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습니다.
- 지목/용도란에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를 적습니다.
- 동의자 소유 토지(권리)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해야 합니다.